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현 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23-123
-----------	----------

발의연월일 : 2023. 10. 16.

발 의 자 : 김현진, 정장훈, 이충현,
전철규, 조기만, 정재봉,
고찬양

1. 제안이유

강서구 내의 ‘거리예술’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하고 우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강서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제4조)
- 다.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및 공연장소 지정·운영(안 제5조, 제6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공연 질서유지(안 제7조, 제8조)
- 마. 공로자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협조부서 :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 : 2023. 10. 17. ~ 2023. 10.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의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및 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거리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가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계획은 해당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질서유지) ①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

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소음·진동 관리법」 등에 따라 거리예술의 활동시간·지역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문화거리의 지정) ① 문화거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강서구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